□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란?

O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인증 내용

- O 추진근거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O 유효기간
 - 신규인증(3년) / 유효기간 연장(2년) / 재인증(3년)
- O 담당기관: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84,9042)
- O 인증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 평가 지표

O 법규 요구사항(공통)

항목	세부항목	기업
1	주 40시간 근로시간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2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제한	근로기준법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3	보건휴가 (또는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4	임산부 근로보호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시행령 제43조 (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5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및 소정근로 시간 변경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6	태아검진 시간 허용 보장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7	유급 수유시간 보장	근로기준법 제75조 (육아 시간)
8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
9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1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1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12	육아휴직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4	가족 돌봄 휴직 및 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1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O 법규 요구사항(공통)

법규 요구사항	비고
1.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공공기관만 해당) 폭력예방 의무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 실적 부진기관 해당여부	여성가족부 주관
2.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상만 해당)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명단 공표여부	보건복지부 주관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적용 대상만 해당) 3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에 미달 사업장 명단 공표여부	고용노동부 주관
4. 고의의 임금 체불 확인 최근 3년간(최근 3년 예시: 2020~2022) 고의의 임금 체불로 2023년 8월(예정)로 공표된 경우를 의미함.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후 확인가능	고용노동부 주관
5.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 위반 여부(최근 2년 이내) -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제한(제53조), 산전산후 여성 해고 제한(제23조제2항), 모성보호제도 준수(제70조~제7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제76조의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항 -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예방교육(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교육 및 사건발생 시 필요조치(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시(제4조의3) - 「국가공무원법」: 고충처리 (제76조의2, 제76조의3) (최근 2년 예시) 2023년 인증신청 대상 기업(관) - 2021.1.1 ~ 인증심사 완료일	여성가 족 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주관
6.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최근 2년 이내) 확인 기업(관)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경우, 기업이나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 등에 의한 물의나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에 의한 논란 등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함. (최근 2년 예시) 2023년 인증신청 대상 기업(관) - 2021.1.1 ~ 최종승인일	

- O 신규인증(최초) 대기업·공공기관
 - 100점 만점에 70점(가점포함) 이상'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에서 5점 이상 획득,'가족친화제도 실행'의 배점에서 35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1.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2.가족친화	2.1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10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2.1.4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2.2. 탄력적 근무제도(15)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제도		2.2.2 연차사용률	5
실행(70)	2.3. 근로자 및	2.3.1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E 0(1.1)	부양가 족 지원제도(10)	2.3.2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2.4.1 가족여가활동 지원	5
		2.4.2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2.4.3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3.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		3.1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20
총계			100

- O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기인증) 대기업·공공기관
 - 유효기간 연장 기준: 100점 만점<mark>에 70점(가</mark>·감점포함) 이상, '가족친화제도 실행'에서 35점 이상
 - 재인증 인증기준: 100점 만점에 75점(가·감점포함), '가족친화제도 실행'에서 35점 이상
 - 공통 기준: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의 배점에서 5점 이상 획득 필수

심사요소		심사항목	배점
1.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		1.1 최고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10
	2.1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30)	2.1.1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10
		2.1.2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10
		2.1.3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	5
		2.1.4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이상 이용률	5
2.가족친화 제도 실행(70)	2.2. 탄력적 근무제도(15)	2.2.1 유연근무제 활용률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스마트워크 등)	10
		2.2.2 연차사용률	5
	2.3.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10)	2.3.1 가족돌봄 휴직 이용 또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5
		2.3.2 근로자 또는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5
	2.4.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15)	2.4.1 가족여가활동 지원	5
		2.4.2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5
		2.4.3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5
3.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		3.1 가족친화제도 실행 및 직장문화 조성 관련 직원 만족도	10
4. 자체점검(온라인) 이력(10)		4.1 2020~2022년도 가족친화제도 자체점검 실적	10
총계			100

O 가·감점

- [가·감점] 각 항목 영역별로 최대 1개씩만 인정함

가·감점 심사항목	바	점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5	5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사업장 제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이용		미해당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육아기 재택근무 이용		
대체인력 채용		
난임휴가 및 휴직 이용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		
탄력적 근무제도	5	5
조기퇴근제 시행		
반반차제도 운영		
주4일제 또는 주35시간제 운영		
근로자 지원제도	5	5
근로자 상담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 자기계발 지원		
장기근속 휴가·휴직 지원		
부양가족 지원제도	5	5
주택지원(자금대출, 사택지원 등)		
배우자 전근 시 근무지 이동 지원		
가족친화문화 조성 제도	5	5
가족사랑의 날(정시퇴근 캠페인)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임원 비율		
협력업체 선정 시 가족친화인증기업 가점 부여		
관련 인증 및 수상 실적	5	5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주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미해당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고용노동부 주관)		미해당
가족친화경영컨설팅(연장/재인증)	5	_
가족문화컨설팅 시행	5	미해당
감점항목	-	-2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서 여성근로자 및	-)11-1	
여성관리자 기준 미달 기업(고용노동부 주관)	미해당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총계 	최대 15점	최대 10점

□ 인증 신청방법

- 1기업회원(기관 포함) 가입 후 가족친화인증 신청> 신규인증/유효기간 연장/재인증별 신청 페이지를 통해 접수
- 1관련 문의: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84, 9042)

□ 인증 절차

	• 사업공고 4월
1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공지사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공지
	Ψ
	• 전국 권역별 설명회 (4월~6월)
	-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심사 기준 설명
2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안내
	- 설명회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인증설명회 신청
	•
2	• 인증신청 (4월~6월)
3	- 인증신청 세부 일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가족친화인증신청안내
	\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6월~8월)
4	- 서류심사 : 법규요구사항, 첨부자료 확인
4	- 현장심사 : 자료 현장 검 <mark>증, 인</mark> 터뷰
	- 신규인증 : 4일, 유효기 <mark>간 연</mark> 장·재인증 : 2일
	•
_	• 가족친화인증 위원회 상 <mark>정 (1</mark> 1월 상정)
5	- 최종 인증여부 결정
	•
	• 인증서 수여 및 정부포상 수여식 (12월 예정)
6	- 개별 결과발표 : 12월(예정)
	₩
7	• 가족친화인증 심사결과 Feedback
7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보고서 제공 (다음 해 1월 예정)

□ 인증 획득 노하우

- O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 O 인증 평가 지표를 참고하여 연간 업무계획 수립·관리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원들이 가족친화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직장문화를 개선